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흥양도시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발간사

PREFACE



여수시민 여러분!

지난 2017년 8월 1일 전라남도 최초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이 출범한 지도 어느새 두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구속력이 없는 저희 시민옴부즈만으로서는 우리의 의지와 다짐과는 달리 시민의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만족스럽게 다하기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사람의 민원인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처음 품었던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억울함을 얼마만큼 풀어주었는지? 과연 시민의 편에서 일은 했는지? 그 결과물을 한치의 숨김도 가감도 없이 일한 그대로를 「2018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에 담아 시민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어 무겁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대표 옴부즈만이라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여수시 대표 옴부즈만입니다. 우리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여러분의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이



받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민옴부즈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대표적인 권익구제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여수시가 세계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 번영의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9. 1.

여수시 대표 시민옴부즈만 **최봉춘**

목 차

CONTENTS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003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004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006
4. 고충민원 처리절차	008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2017년 결정사항 처리결과	011
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015
3. 시민옴부즈만 활동	030
4. 시민옴부즈만 홍보	035

III 주요 처리사례

1.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1건)	043
2. 시정권고(6건)	047
3. 의견표명(2건)	064
4. 합의(1건)	071
5. 심의안내(1건)	074
6. 기각(10건)	076
7. 각하(2건)	100

IV 부 록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105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11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도입배경

-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시민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익구제 제도만으로 민원해결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가진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시민과 소속기관을 포함한 여수시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전문적·중립적 입장에서 조사와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2. 운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3. 추진경과

- 2016. 10. 0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04. 0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7. 06. 29.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개최
- 2017. 07. 2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위촉대상자 선정 동의안 의회 의결
- 2017. 08. 0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18. 02. 13. 201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신분 : 2명,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주 4일 근무
- 운영방식 : 옴부즈만 독립적 직무수행
- 주요임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 ·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 처리 또는 조정 · 중재
 - 위법 · 부당한 업무 처리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감사 의뢰
 -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 · 점검 등

2. 시민옴부즈만 관할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 여수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여수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관
- < 민원처리 예외 대상 (규칙 제7조) > —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시민옴부즈만	주요경력	위촉기간
 <p>최봉춘 (대표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시 국장(기획관광, 경영기획) 여수시 감사담당관 	2017. 8. 1 ~ 2019. 7. 31
 <p>곽종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수농협 지점장 여수농협 상무(감사, 법무) 	2017. 8. 1 ~ 2019. 7. 31

< 옴부즈만의 자격 (법률 제33조) >

-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2.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주민들의 권리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4

고충민원 처리절차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고충민원 신청



- 방문, 전화 등 접수
- 민원 상담 및 분류
- 처리기한 : 60일 이내
- 조사여부 결정(각하 등 해당 여부 판단)
- 담당 음부즈만 지정

운영회의



조사개시 통보



- 신청인 조사개시 통보
- 해당부서 고충민원 통보 및 자료 요구
- 민원 자료 검토 및 현장 조사
- 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조사 실시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에 따른 심의·의결 또는 운영회의 심의·의결

심의·의결



조사결과 통지



결과 회신

- 해당부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에게 조사결과 통지(3일 이내)
- 음부즈만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2017년 결정사항 처리결과
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3. 시민옴부즈만 활동
4. 시민옴부즈만 홍보

1

2017년 결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시정권고 4건(수용 2, 불수용 2)

연번	민원요지	결정내용	처리결과
1	돌산읍 예교마을 화태대교 인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	화태대교 공사 시 잔여지 17필지(6,822㎡) 농업진흥 구역 해제토록 시정권고	불수용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17.10.11. 농식품부) 하였으나 해제불가 회신
2	2012년 일반택시 면허 취소된 택시 6대 증차 요망	국토교통부에 증차시기를 일실한 감차분 6대 소급 증차해 줄 것을 권고	불수용 여수시의 경우 제3차 총량제를 통해 산출된 적정 대수 대비 총 면허대수가 많아 택시가 과잉공급된 사업에 해당되어 증차가 제한되고 있음.(17.9.4.)
3	여서동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반영 및 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상황 확인 감독 요구 - 운영비 사용규정 제·개정 시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 입주자 대표회의 사용 내역 별도 작성 및 공개 토록 요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지출내역 검토 결과 위반사항 없음. - 운영비 사용 시 관리 규약 준수토록 하고, 운영비 사용규정 개정 시 충분한 의견 수렴하도록 함. - 운영비 사용내역 게시판 공개토록 시정명령

연번	민원요지	결정내용	처리결과
4	○○○○주택조합 소하천 부지 용도폐지	○○○○주택조합개발부지로 편입된 하천부지 소라면 죽림리 △△△(구, 730㎡) 용도폐지를 위해 시가 조합 측에 제시한 보증보험증권 XXX,XXX천원 중 공사비 YYY,YYY천원에 대한 시 부담 요청 민원으로 조합주택인 점과 용도폐지가 되지 않아 재산관리 행사를 못하고 금융 기관에 담보물건을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금 회수로 인한 가정경제가 파탄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신청인의 요구 를 수용토록 권고	수용 토지매입비 ZZZ,ZZZ천원을 죽림지역주택조합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가입하여 여수시에 제출, 용도 폐지 후 민원 회신 ('18.1.26.)

2. 의견표명 10건(수용 10)

연번	민원요지	결정내용	처리결과
1	광무동 도로축대 유실 위험 보강 조치 요구	안전 등을 고려 축대보강 및 안전휀스 설치 요구	수용 2018년 주민숙원사업 반영 후 사업완료('18.3.)
2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광장) 일부 해제 건의	40년 전 수립된 도시계획 시설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산권보장 정당보상 원칙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판결사례에 비춰 해제하고 상습 침수 지역은 우수배제 조치토록 의견표명	수용 - 우수받이 확장공사 완료(17.11.~12.) - 도시계획시설(광장) 해제('18.9.)

연번	민원요지	결정내용	처리결과
3	○○ 정주여건 개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내 수세식 화장실(정화조 포함) 개조 시 적극 허가 검토(공공하수도시설 필요 여부) - 퇴적층 조각의 기울어진 돌담 등 조속 정비 - 탐방객 수 증가에 따른 휴게공간 및 탐방로 설치 	<p>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가정의 오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방류하여야 하므로 공공하수도 설치 어려움(하수도과) - 2019년 돌담정비 사업비 확보(2개소, 43백만원) - 문화재 안내판 정비(6백만원, 18.10.) - 문화재내 방범용 CCTV 설치(3개소, 16백만원, '18.12.)(문화예술과) - 입도객 등의 추이를 고려 장기적 검토(관광과)
4	2008년 여수 시민의 상부상 수여 요청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 수여는 어려우나 분실된 상패는 제작 전달하도록 의견표명	<p>수용</p> <p>여수시민의 상패 제작 전달(17.11.)</p>
5	돌산읍 하동-월전길 구간 내 포트홀 정비 요청	사고발생 및 차량파손 등 우려가 크므로 조속 정비하도록 의견표명	<p>수용</p> <p>파손된 도로 정비 완료(17.11.)</p>
6	여서동 문화의 거리 조형물 일부 철거 및 보수 요청	파손된 조형물의 보수, 안전장치 보강, 안전주의 경고문구 정비 및 주변 환경 정비도록 의견표명	<p>수용</p> <p>벤치 52개소 정비(오일 스텐처리), 조각배 아래 안전장치 보수, 파손된 데크 및 보도 정비 완료(2017.12.)</p>

연번	민원요지	결정내용	처리결과
7	텃골공원 내 보호수 제거 및 고목 관리 요청	고사중인 보호수 및 고목에 대한 위험 상존하므로 관리하도록 의견표명	수용 - 고목 가지치기 완료 ('17.12.) - 보호수 정비완료 ('18.6.)
8	신기○공원 내 도박성 울 놀이판이 벌어진 파고라 좌우 공간에 휴게의자를 설치하도록 의견표명	실효성 없는 단속보다 울 놀이판이 벌어진 파고라 좌우 공간에 휴게의자를 설치하도록 의견표명	수용 휴게의자 설치 완료 ('18.3.)
9	합병말소된 미평동 ○○○ 번지 도시계획선 말소 요청	- 민원 토지의 도시계획 선은 도로교차점에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말소는 불가함. - 미평동 ○○○번지(대, 269㎡)에 기 건축된 면적 160.46㎡을 재건축 할 경우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2㎡는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 함.	수용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미평동 △△△번지(대, 2㎡)를 분할하여 보상 협의 완료하고, 여수시로 소유권 이전완료(2018.10.)
10	연등동 주택가 골목길 계단 정비 요청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연등동 ○○○번지 마을 안길 계단이 가파르고 비좁으며, 노면이 고르지 못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난간 및 계단 정비 필요	수용 마을안길 정비공사 완료 ('18.9.) : 계단정비 L=31m, 난간 설치 4경간 등

2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민원접수·처리 현황

〈민원 접수 현황〉

구분	합계	직접조사	이첩	취하	상담완료
계	167	52	32	3	80
2017	67	26	15	1	25
2018	100	26	17	2	55

〈직접조사 처리 현황〉

구분	합계	조사결정								진행중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계	52	49	10	12	1	2	4	16	4	3
2017	26	26	4	10	-	1	3	6	2	-
2018	26	23	6	2	1	1	1	10	2	3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수용 현황〉

구분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소계	수용	불수용	진행중	소계	수용	불수용	진행중		
계	23	20	2	1	10	9	2	1	12	1
2017	14	12	2	-	4	2	2	-	10	-
2018	9	8	-	1	6	5	-	1	2	1

2. 2018 민원접수 내역

〈시민옴부즈만 직접 조사 처리 내역〉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1	1.16.	정○○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로로 편입 조사된 사유지 반환 요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여수시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경계가 확정되었고, 같은 법에 따라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음.	완료 (기각)
2	1.18.	박○○	△△시장 임대차 사용기간 폐지 또는 변경 요청	조례 개정 요청 내용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위반되며, 신규 입점 희망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이유가 없음.	완료 (기각)
3	1.23.	임○○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로 편입된 주택에 대한 대체 토지 취득세 면제 요청	여수시의 사업추진이 일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실시설계 완료)가 미 추진되었을 뿐 설명회를 통한 사전 고지로 신청인이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향후 공익사업 추진에 악명향을 미치므로 취득세 감면과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취득일지라도 대체 취득이 확인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할 것을 권고함.	완료 (시정권고, 제도개선)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4	2. 1.	송○○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 차장 신축 부지 내 떡 방앗간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또는 폐업보상 요청	대체부지 마련은 사업시행자인 여수시가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현금보상을 추진하였고, 폐업보상요구는 같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폐업보상 대상이 아니고 2018년 2월 현재 여수시 관내 등록업체 73개소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고 최근 여수시가 보상한 등록의 떡방앗간 3개소도 휴업보상하였으며, 전국적으로도 폐업보상한 사례도 없음.	완료 (기각)
5	2. 1.	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 차장 신축부지 이주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 관련 시장(市場) 측과 중재 요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민옴부즈만이 처리할 사안은 아니나 여수시가 추진한 공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2차례에 걸쳐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양측 입장과 위로금에 대한 이해차이로 중재가 불가하여 종결	완료 (기각)
6	3. 5.	김○○	관문동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취소 요청	해당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4층 이하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조망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사항이 있으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완료 (기각)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의거 적법하다는 일조권 영향 분석평가 결과와 사회통념상 일조권관련 판결(서울고법2004 나56440, 2005.10.28.)을 종합 검토할 때 건축허가 취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7	3. 7.	이○○	율촌 동양맨파트 아파트 앞 도로변 인도 설치 요청	<p>아파트 앞 도로는 폭 8m의 도시 계획도로로 현 상태에서 도로를 줄여 보도를 설치할 경우 차로 폭 3m, 2차선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좁아진 차로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어 도보 설치가 불가하고 기각함.</p> <p>다만, 피신청인이 제시한 맞은 편 택지 보도설치 방안에 대해 택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피신청인에게 도보개설 요구 할 것을 권유함.</p>	완료 (기각)
8	3. 7.	박○○	(주)△△ 사업허가 취소 요청	(주)△△의 사업허가 취소요청에 대해 현장 조사결과 적정량 (1,977.8톤) 이하로 처리되고 있고, 분진·소음 등도 기준치 이하로 「폐기물 관리법」제27조에 의한 허가취소 대상은 아니나 현장 확인 시 안전휀스(H=10m) 설치, 마을발전기금 지급 등 실제적인 요구에 대해 (주)△△에서 전폭 수용하므로 합의 종결함.	완료 (합의)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9	3. 9.	문○○	기초연금 소급 지급 요청	신청인의 지급정지된 기초연금을 재수령하는 자격이 회복된 것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할 기초연금을 여수시의 조사 누락으로 발생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반납처분한 내용에 대해 정정하고 미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포함한 감액분 지급할 것을 권고	완료 (시정권고)
10	3. 20.	서○○	만덕동 △동 진입로 개설 요청	진입로(L=60m) 옆 사유 토지를 확보하여 확장하고, □□천(소하천) 편으로는 난간 설치	완료 (시정권고)
11	3. 21.	김○○	돌산읍 우두리 △△△ 번지(도로) 개설 요청	돌산읍 우두리 △△△번지(도로)는 일반도로(시도) 또는 농어촌 도로(면도, 이도, 농도)가 아니므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읍면동 지역 회의에서 지역현민사업으로 발굴 결정되도록 노력하시길 권유함.	완료 (심의안내)
12	3. 26.	신○○	신월동 널너리 진입로 차량회전 공간 확보 요청	신청인, 여수시 관계자(도로관리사업소), 옴부즈만이 민원 현장에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소 회전 반지름이 최소 6미터에서 최대 12미터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 위치는 여건상 도로폭이 협소하여 시설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안내	완료 (기각)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13	3. 26.	신○○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 신호체계 개선 요청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신호체계 등을 포함한 교통체계 개선토록 함.	완료 (의견표명)
14	3. 30.	김○○	개인하수시설 파손에 따라 유입된 오페수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보상 요청	신청인의 건축물에 균열을 발생케 한 요인으로 특정한 봉강동 △△△번지의 하수관로는 여수시장이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하는 하수관로로 확인되었고, 하수도 사용로 징수로 보강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반대급부로 내는 사용료임.	완료 (기각)
15	4. 17.	김○○	건축물대장 상 대지 위치 정정 요청	여수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2012~2018)과 과세상황을 확인할 때 기재착오가 분명하고, 지적측량 결과부(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건축물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에 따라 직권 정정토록 시정권고	완료 (시정권고)
16	5. 24.	곽○○	공영주차장 내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요청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신청인의 보험 혜택 기회를 근본적으로 막고, 「보험업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완료 (시정권고)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임무를 막는 것은 신청인과 손해사정사의 권리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미리 과실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보험 신청 후 손해 사정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17	6. 7.	권○○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량원부 멸실 및 세금 감면 요청	신청서 보완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신청서의 보완)에 따라 종결	완료 (각하)
18	6. 28.	안○○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미행강제금 부과 취소 요청	본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여수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신청인의 처지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합법화 시킬 수 없음	완료 (기각)
19	8. 30.	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안내 소홀로 발생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청	여수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법·상식과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된 법 위반이므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관련 별표 3에 따라 신청인과 남편에게 각각 처분 예고한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완료 (의견표명)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20	8. 31.	강○○	△△아파트 내 운동시설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요청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확정된 사항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각하	완료(각하)
21	9. 5.	박○○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된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 요청	하수관로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자연유수 위치에 매설된 것으로 보이고, 이설할 경우 같은법 제223조에 의거 주민 동의가 있어야하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응벽침하 우려 시 하수관로 및 응벽 보강 공사로 해소할 수 있어 이설 요청을 기각	완료(기각)
22	10. 4.	김○○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대토 보상 요청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 인정의 고시만한 후 토지수용 법이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적법한 보상절차의 미행없이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함.	완료(시정권고)
23	10.29.	최○○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요청	신청인의 토지를 기점으로 상류지대의 구거 즉 익산-여수간 철도(전라선 옛 철길공원) 구간의 구거 칙강화로 인한 하류지대의 곡선지점에서 피해가 발생된 점,	완료(시정권고)

연번	접수일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완료여부
				해당지역 토착민의 진술, 당시 시대상황으로 보아 농민의 생명줄인 문전옥답을 아무런 이유 없이 승인해 줄 가능성 희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할 것으로 피신청인은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거 피신청인이 구거 직선화사업으로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토지(오림동 △△△-△, 답)와 사실상 폐구거로 남아있는 피신청인의 토지(오림동 □□□-□□□, 구거)를 상호 교환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을 권고	
24	8. 9.	김○○	수산시장 주변 공명주 차장 조성 관련 주택 수용 철회 요청		추진중
25	8. 13.	김○○	주택 신축을 위한 시 유지(도로) 수의 매각 요청		추진중
26	12.10.	박○○	건축신고 시 제출된 도로지정 등의서 진위 여부 조사 요청		추진중

(이첩·취하 민원 내역)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1	도로침범(도로 점유) 시설물 단속 요청	이첩	도로관리 사업소
2	소호동 ○○아파트 노인회장 사업에 따른 재선출 요청	이첩	노인장애인과
3	화양면 이천중촌길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요청	이첩	교통과
4	화양면 이천리 ○○마을 경로당 등록 신청	이첩	노인장애인과
5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편입 이주민 ○○동 행복 주택 우선 입주 요청	이첩	허기민원과
6	시내버스 노선 및 버스 승강장 명칭 개선 요청	이첩	교통과
7	차량흐름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	이첩	교통과
8	만덕동 ○통 경로당으로 사용을 위한 주택 매입 요청	이첩	노인장애인과
9	만성리 해수욕장 인근 군부대 사격훈련 자체 요청	이첩	국방부
10	돌산읍 강남로 ○모텔 사거리 교통신호 대기시간 단축 요청	이첩	교통과
11	육상양식장 임배수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마을 주민들의 처리 요청	이첩	해양항만 레저과
12	율촌 ○○마을 수도관 수증 매설 요청	이첩	상수도과
13	율촌 ○○마을 경로당 및 리사무소 신축 요청	이첩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14	율촌 ○○마을 승강장 부근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이첩	도로관리 사업소
15	구)국도17호선 상 ○○○아파트 진입로 표시 요청	이첩	교통과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담당부서
16	화양면 ○○마을 보안등 신설 요청	이첩	도시재생과, 화양면
17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변경에 대한 해명 및 탈락자에 대한 구제 절차 문의	이첩	기후환경과
1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 질의	취하	
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 준공 요청	취하	

〈상담완료 내역〉

연번	민원제목	처리결과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불공평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당함 제기	시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공사 측과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도록 안내
2	○○요양원 옆 가입장 배수지 동파로 보이는 누수신고	상수도과 연계 처리
3	푸드트럭 운영에 따른 장소 지정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식품위생과 연계 안내
4	건어물 판매업 창업관련 문의	식품 소분업 신고 절차 등 안내
5	- 전라남도 마을활동가 교육수료자 적극 활용 요청 - 원도심의 경우 장기 재직으로 인한 통장 세력화 방지를 위해 여성인구가 많은 통에 여성 통장 위촉 건의	시 직소민원 연계 처리
6	시전동주민센터 공용주차타워 건축에 따른 지적선 준수 요청	교통과 연계 처리
7	○○원자력발전소에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미 인정에 따른 구제방법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순천출장소 이용 안내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기 민원서류 별도 시 제출 여부 문의	민원 처리 절차 안내

연번	민원제목	처리결과
9	공영주차장 편입부지 보상가 저렴 이의제기	이의신청 방법 및 수용절차에 의한 재평가 사항 안내
10	시내버스 미정차에 대한 항의 및 지도 감독 요청	교통과 연계 처리
11	○○요양원 옆 가압장 배수지 등파로 보이는 누수신고	상수도과 연계 처리
12	-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간사 세력화 방지 요청 - '시민과의 대화' 시 일반 시민 참여기회 확대 요청	시 직소민원 연계 처리
13	교통정보안내기(BIT) 오류 조치 요청	교통과 연계 처리
14	조부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 및 경위 확인방법 요청	행정기관의 확인 방법은 없고 도면을 통한 필자별 역추적 안내
15	이순신 공원 「소원드리기 기념의 숲」에 식재된 수목 관수 요청	산림과 연계 처리
16	야생동물 예방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 안내 요청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 안내 후 신청 완료
17	배우자의 병환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혜택 지원 요청	만덕동과 연계 처리
18	농지원부 신규 신청 절차 문의	구비서류 및 신청장소 안내
19	시내버스 자연 운행에 따른 항의	교통과 연계 처리
20	돌산읍 신복리 산○○번지(시유지) 매각 가능여부 문의	회계과 연계 처리
21	돌산읍 둔진리 ○○번지 인근 농로포장 요청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안내

연번	민원제목	처리결과
22	통행 불편 초래하는 전주 이설 요청	한국전력공사 소관 안내
23	이웃간 공동주택 철거에 따른 협의 중재 요청	사인간의 사항으로 시의 무료법률상담 안내
24	- 웅천 매기박스 사거리 신호시간 및 신호순서 조정 요청 - 봉계동 아주타운 진입로 주정차 단속 요청	시 직소민원 연계 처리
25	인도 점용 가로수 이설 및 보도블럭 정비 요청	산림과 연계 처리
26	여천역-반월마을 간 주정차 단속 요청	교통과 연계 처리
27	화양면 나진리 다가구 주택 조성 시 사유지 침범으로 인한 시공사의 대처 미흡에 따른 조정 요청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연계 처리
28	신축중인 현장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장소 변경 요청	도시미화과 연계 처리
29	여수산단 내 삼거리 신호등 신호시간 조정 요청	교통과 연계 후 경찰서 이첩 안내
30	이순신공원 계단 마감처리 미흡 시정 요청	공원과 연계 처리
31	주민 한사람이 절도 등 마을의 갈등을 부추기므로 처벌 요청	여수경찰서 소관 안내
32	○○중학교 부지로 기부체납한 마을소유부지가 전 소유자 상속인으로 되어 있음에 따른 소유권 복원 가능문의	여수교육지원청 소관 안내
33	국도77호선 도로점용 허가 신청 문의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안내
34	남면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불허 요청 - 용도폐지 시 대형버스 회차 등이 어렵고 주민불편 초래	건설과 연계 처리 -용도폐지 민원 취하

연번	민원제목	처리결과
3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및 포획가능 여부 문의	기후환경과 연계 처리
36	도로 미확보로 인한 건축 신고 불가에 따른 해결방법 문의	허가민원과와 연계 대안제시
37	주택 진입로 소유자가 차량통행 제한하므로 해결 요청	시 직소민원 연계 처리
38	국유지(기획재정부) 매각절차 및 담당부서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안내
39	학동 우체국 옆 KT사무실에서의 성추행 신고	여성가족과 연계 처리
40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위해 이적장에 적치된 물건을 치워야만 한다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도시계획과 연계 처리
41	미평6길 ○○일대 보안용 CCTV 설치 요청	정보통신과 연계 처리
42	조율증 치료 의약품 무상 지원 요청	건강증진과 연계 처리
43	개인 소유 나무 기증을 위한 관련부서 문의	산림과 연계 처리
44	태양광 시설 허가관련 여수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 질의	도시계획과 연계 처리
45	○○산 입구 경작 단속 요청	시 직소민원 연계 처리
46	금호피엔비 1공장 ~ 대림산업 간 도로 파손 정비 요청	도로관리사업소 연계 처리
47	○○아파트 이웃집 출연과 고성방가 등 소음문제 해결요청	사인간의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해 중재 요청 토록 안내

연번	민원제목	처리결과
48	소방서 점검 시 불법 건축물 발생에 따른 처리 방안 문의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확인하고 불가 시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안내
49	문화예술 보조금 집행관련 문의	보조금 집행절차 및 점검 의무사항 등 안내
50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안내미흡으로 인한 인구증가 시책 인센티브 미지급 피해에 대한 항의	신고 시 조건 미흡으로 인한 미지급임을 안내
51	○○병원 뒤 상가건물 앞 장기주차로 영업에 지장초래 하므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교통과 연계 처리 -주민동의서를 제출 후 교통심의위원회 회부 결정함을 안내
52	시의 상수도공사로 인해 호우 시 범람우려가 있으므로 규격에 맞는 관으로 보수 공사 요청	상수도과 연계 처리
53	돌산 ○○푸드 앞 움푹 패인 노면 보수 요청	도로관리사업소 연계 처리
54	해산동 ○○○번지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로 원상 복구 요청	현황 측량하여 정확한 편입 면적 파악 후 해결방안 모색토록 안내
55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편입 보상관련 기 수령자와 미 수령자와의 차별이 없어야하며, 시에 협조적인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	교통과 소관 안내

3

시민옴부즈만 활동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201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근 거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
- 시 기 : 2018. 2.
- 대 상 :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시민
- 방 법 : 공고, 책자 제작(300부), 시 홈페이지 게재



2017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제1부	제2부
제1장 조직 및 운영	11
제2장 시민접근 및 지원	12
제3장 민원처리 및 조언	13
제4장 평가 및 개선	14

2.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 시 기 : 2018. 2. ~ 2018. 5. / 월 2회 / 1일 1~2개소
- 대 상 : 17개 읍·면·동
- 민원상담 : 2개반 4명 (시민옴부즈만 2, 공무원 2)
- 추진절차 : 현장상담, 민원접수 → 민원검토, 조사 → 처리결과 통보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시민옴부즈만 운영 홍보 등

◆ 2018년 운영(17개 읍·면·동)

- ▶ 2월 : 둘산읍, 광림동, 만덕동
- ▶ 3월 : 을촌면, 월호동, 한려동, 화정면, 대교동
- ▶ 4월 : 국동, 화양면, 중왕동, 동문동, 충무동
- ▶ 5월 : 소라면, 둔덕동, 남면, 서강동



을촌면



화정면

3. 지방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및 운영 성과 사례 발표

- 일 시 : 2018. 10. 11. ~ 10. 12.(1박2일)
- 장 소 :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 참 석 : 최봉준·곽종철 시민옴부즈만, 옴부즈만 지원 담당자
- 내 용
 - 고충민원 관련 법령·제도 이해 및 처리기법 소개
 - 옴부즈만 기관 운영 현황 및 고충민원 처리 사례 발표 등



4. 시민옴부즈만 활동 사진



< 2018. 3. 26. 만덕동 ○통 진입로 개설 요청 현장 방문 >



< 2018. 6. 26.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 개선 요청 현장 방문 >



< 2018. 9. 6. 주택 신축을 위한 시유지(도로) 수의 매각 요청 현장 방문 >



< 2018. 10. 29.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대토 보상 요청 관계자 회의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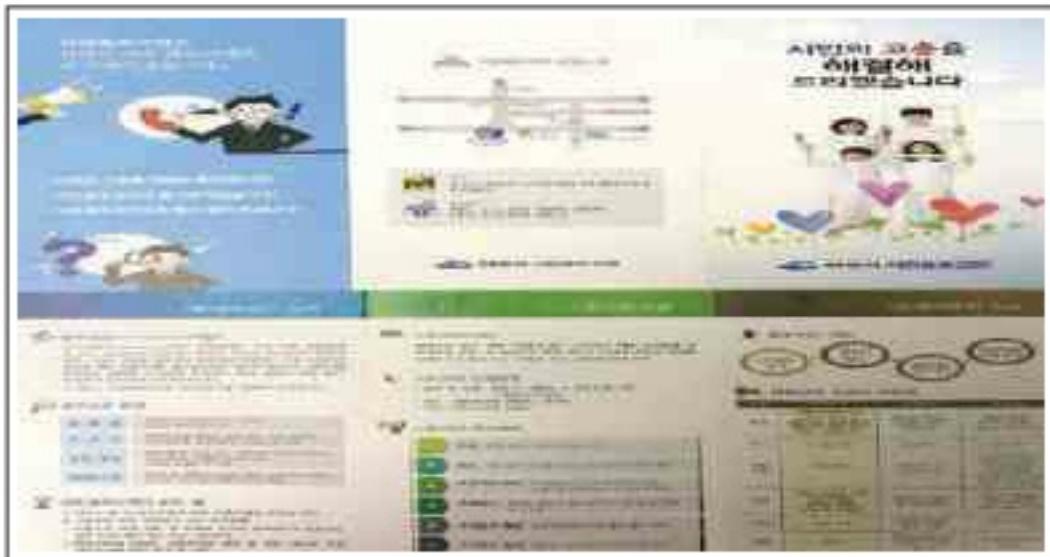
시민옴부즈만 홍보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1. 홈페이지 개설 및 팝업창 게시



2. 리플릿 제작 배부(3,000매)



3. SNS(여수이야기) 및 시민소통광장(여수시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여수시 – 여수어랑과 함께 새로운 사회 청탁을 주고받습니다.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이 전개됩니다. 여수어랑은 문화 활동 중심의 청탁역사로, 조사하고 청탁하는 시민옴부즈만의 청탁문화로 직접 참여합니다!!!

문의 : 시민옴부즈만실 ☎ 061-459-3075

시민 그루 대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온라인 설문조사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여수시 –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법률]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정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청탁문화로,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일정

주	일	월	화	수	목
여수어랑 청탁문화 전개 일정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청탁문화로, 여수어랑과 함께하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4. 언론보도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현장 고충 해결 '시작' (2018. 2. 1.)
 - 브레이크뉴스 등 12개 언론

BreakNews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현장 고충 해결 시작

여수시민이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급변동 손화로 당부리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급변동 손화

<http://news.s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6205>



여수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은 금방하고 싶은 시민옴부즈만이 골때도 면급한일은 직접 찾아간다.

여수시에 따르면 미급부터 초등학교 시민옴부즈만 2명과 중학교 2명이 1명으로 조합하여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상담장소는 급변동 주민센터, 관동장애인 재활센터, 성당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다.

옴부즈만은 시설연관 단순 철거사례 등은 한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전문 학습·증명서를 증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는 어제, 금수, 미묘, 관동, 시민, 어린 등 6개 곳에 찾은 2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올해 2월 방문민원은 21일 관동동, 22일 금수동, 24일 관동동이다.

회봉은 대표옴부즈만은 "시민의 적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구호처럼 문제도 시민생활 속으로 찾아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법적인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가 보호받는 법원소송관을 맡았다.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1주년, 사회갈등 해소 '호평' (2018. 7. 30.)
 - 여수MBC 등 35개 언론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통해 민원 103건 처리

여수 MBC

뉴스 TV 라디오 광고판매 브로드캐스팅 MBC 뉴스 앱

NEWS

여수시 '시민옴브즈만' 통해 민원 103건 처리

여수시민옴브즈만은 2018년 7월 30일 출범 1주년을 맞아 103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시민옴브즈만 출범 이후 1년간 처리한 민원 총 수입니다. 시민옴브즈만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분석·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여수시민옴브즈만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분석·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권익위 워크숍 성과사례 뽑혀(2018. 10. 15.)
 - 여수신문 등 6개 언론

여수신문 뉴스 기획·특집 오피니언 포토광장 콘텐츠

여수신문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권익위 워크숍 성과사례 뽑혀 11일 최봉준 대표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사례 등 발표

● 이동화기자 ● 출판 20대, 30대 독자를 ● 댓글 0

2018년 제 1회 시민옴부즈만 워크숍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11일 오후 2시 여수시민옴부즈만 회의실에서 '2018년 제 1회 시민옴부즈만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II. 주요 처리사례

1.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1건)
2. 시정권고(6건)
3. 의견표명(2건)
4. 합의(1건)
5. 심의안내(1건)
6. 기각(10건)
7. 각하(2건)

1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로 편입된 주택에 대한 대체 토지 취득세 면제 요청

1. 민원개요

2017년 3월 여수시(교통과)가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로 편입된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201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니 12월 이전에 이주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정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여수시 광무동에 대체 토지를 구하여 2017년 12월에 계약을 한 후 여수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해 줄 수 없다고 한 바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취득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가 추진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로 편입 수용된 주택 이주를 위한 대체 토지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고, 우리 시가 추진한 공익사업을 적극 협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함.

3. 사실관계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정 : 2017. 2. 16.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주민설명회(제1차) : 2017. 3. 10.
 - 2017. 12월 중 착공 예정
 - 2017. 12월 이전 이주 요청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주민설명회 : 2017. 8. 22.
 - 주민 추천 평가사 선정
 - 이주택지 부지 제공(이주 희망자 없음)
 - 주민 요구사항 수렴
- 대체 취득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2017. 11. 23.
 - 소재지 : 여수시 광무동 ○○○-○(대, 102㎡)
여수시 광무동 △△△-△(답, 13㎡)
 - 매매대금 : 6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 2017. 12. 11.
- 토지 보상 및 매입 : 2018. 1. ~ 2.
- 사업인정고시(실시설계완료) : 2018. 5.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3. 판단 및 결론

- 피신청인은 2017. 3. 10. 신청인 외 31명을 대상으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17.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니 2017. 12월 이전에 이주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2017. 8. 22.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추천 평가사 선정, 이주택지 부지 제공(이주희망자 없음) 등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거듭 확정되었음을 신청인을 비롯한 해당 주민들에게 고지함.

- 이후 신청인은 2017.11.23. 여수시 광무동 ○○○-○ 외 1필지 115㎡를 매매대금 65,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에 계약 체결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세정과)에게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수산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인정고시(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계약 체결하였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또는 각 개별법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당한 자에게 대체 토지를 구입하고, 이주할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면서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실현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생을 강요하는 제도에서 그 보상차원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마저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 제한한 것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이주해야 될 이주민이 이주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할 수 있는 기간을 더욱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국가(여수시)를 불신하여 향후 공익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소유 여수시 남산동 □□□□-□번지(대, 129㎡, 건축연면적 105.75㎡)가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 추진 일정에 의거 아직 사업인정고시(실시설계)가 미추진 되었을 뿐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편입 토지임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매매 계약한 여수시 광무동 ○○○-○ 외 1필지 115㎡ 역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로 편입된 대체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하도록 계한한 것은 해당 토지가 공익 사업에 최종 편입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인 바,
- 신청인이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로 편입 토지의 대체 토지로 매매계약 체결한 여수시 광무동 ○○○-○ 외 1필지 115㎡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대체 토지로 확인되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개정)을 요구할 것을 권고함.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세정과

- 2018. 2. 7.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2,600,000원, 지방교육세 26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000원 등 합계 2,990,000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라 감면처분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2018. 3. 7. 전액환급 처리함.
- 전라남도에 취득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2018. 9. 20.)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2

시정권고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기초연금 소급 지급 요청

1. 민원개요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해오다 2015년 하반기 신청인 명의 시가 4억 원의 비상장주식으로 인해 수령했던 약 2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반납하고 지급 중지되다 세무서 조사에서 본인 소유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2018. 1.부터 다시 수령하고 있으므로 반납분과 미수령 기초연금 지급 요청

2. 사실관계

- 기초연금 지급 신청(2014. 2. 25.) 및 책정(2014. 5. 30.)
 - 급여 지급(2014. 6. ~ 2015. 7, 2015. 11.)
 - * 비상장주식 보유 사유로 지급 제외 기간 : 2015. 8. ~ 10.
- 2015 하반기 확인조사 시 비상장주식(409,960,000원) 소유로 기초연금 지급 정지 : 2015. 11. 19.
-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반납 : 2016. 2. 18.
 - * 금액 : 2,167,160원, 대상기간 : 2014. 6. ~ 2015. 7, 2015. 11.
- 기초연금 재신청(2017. 1. 25.) 및 책정(2017. 3. 14.)
 - 급여 지급(2017. 1. ~ 2018. 4. 현재)
-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비상장주식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 정정 : 2018. 1. 11.
- 배우자 ○○○ 기초연금 신청(2017. 11. 16.) 및 책정(2017. 12. 11.)
 - 급여 지급(2017. 12. 25. ~ 2018. 4. 현재)

3. 판단 및 결론

-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4억원의 비상장주식이 신청인의 실제 소유 주식이 아님이 확인되어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재수령하고 있음.
- 이는 신청인이 지급정지된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것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 할 기초연금을 피신청인(행정처분청)의 조사 누락으로 발생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인 바,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법위) 제1항 및 같은법 제25조(처분의 정정)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부당이득금으로 반납 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하고 미지급된 기초연금액을 포함한 감액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청인 및 배우자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함.
- 정정 처분 대상
 - 부당이득금 반납액 : 2,167,160원
 - 신청인 미지급분 및 감액분
 - * 미지급 기간 : 2015. 8. ~ 10., 2015. 12. ~ 2016. 12.
 - * 감액 기간 : 2017. 1. ~ 2017. 12.
 - 배우자 감액분 : 80,000원(2017. 12.)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비상장주식의 본인 재산 아님 소명에 대한 미지급분(15. 8. ~ 15. 10./15. 12. ~ 16. 12), 감액분(17. 1. ~ 17. 12.) 6,077,150원(반납액 2,167,160원 + 미지급액 3,909,990원) 소급 및 비상장주식의 본인 재산 아님 소명에 대한 2017. 12. 배우자 급여 차액분 119,660원 소급분 2018. 5. 25.(금) 지급 완료

만덕동 ○통 진입로 개설 요청

1. 민원개요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 조성 시 주변 여건상 당연히 편입되어야 합
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차량 진입도 할 수 없는 협소
한 소로($L=60m$, $B=1.4m$)에서 7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은 물론
주택 증·개축 시 건축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는 실정인바 진입
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람.

2. 사실관계

- 신청인이 진입로 개설을 요청한 만덕동 ○통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부지에서 최종 제외된 지역으로서 신청인을 비롯한 총 7가구(16명)가
거주하고 있고,
-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신청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거주한
위치까지는 소하천(△△천)을 따라 형성된 소로($L=60m$, $B=1.4m$)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긴급 상황(화재, 환자) 발생 시 차량 진입이
되지 않아 긴급대처가 불가능하며 콘크리트로 구조된 소하천(△△
천)의 깊이가 2m 이상임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이 없어 인명
사고가 상존하는 실정이며 노후주택 증·개축 시 건축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임.

3.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이 요청한 진입로 개설은 현재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로 사용
하고 있는 소로($L=60m$, $B=1.4m$)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확장해
달라는 의미인 바,

- ▣ 진입로 옆 개인 토지의 일부를 확보하면 진입로 확장이 가능하므로 (현재 도로가 확장될 경우 지가상승 및 토지 활용도가 올라가 소유자 설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장하고 소하천(△△천) 편으로는 난간을 설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함.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건설과, 만덕동

- ▣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는 진입로 옆 개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 실정이며, 만덕동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한 후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건의 사업으로 건설과에 제출되면 타당성 검토 후 “덕충안길 □□번지 인근 진입로 확장공사”로 난간 설치를 포함해 사업 추진할 계획임.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상 대지 위치 정정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 해산동 산 ○○번지 내 △△△ 소유의 건축물이 여수시 해산동 □□-□번지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대지 위치로 정정 요청

2. 사실관계

- 토지 현황 : 여수시 해산동 산 ○○번지(임야, 2,110㎡, ◇◇◇)
- 건축물대장 현황
 - 대지위치 : 여수시 해산동 □□-□(개발제한구역)
 - 소유자 : △△△
 - 준공연도 : 1954년
 - 건축물 현황 : 4동/121.12㎡(개발제한구역, 미등기)
 - 주택(목조/기와, 41.95㎡)
 - 건조실(시멘블럭/스레트, 34.65㎡)
 - 부속사(목조/스레트, 23.52㎡)
 - 축사(시멘블럭/스레트, 21㎡)
- 14년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에 따라 지번 변경 : 2014. 12. 12.
 - 해산동 ⑩⑩번지 → 해산동 □□-□ 지적과 건축물 일치
 - ※ 여수시 해산동 □□-□(2,031㎡, 수도용지, 여수시)
 - 1989. 9. 11. 토지 합병(○번지 외 5필지 → □□-□)
- 상수도과-25432(2016.12.30.)에 따라 건축물 말소 : 2016. 12. 30.
- 상수도과-4630(2018.3.6.)에 의한 건축물 회복 : 2018. 3. 7.
- 재산세 과세상황
 - 대상물건 : 여수시 해산동 산 ○○번지
 - 부과연도 및 납세의무자
 - 2002년~2007년 : △△△
 - 2008년~2014년 : △△△의 처(妻)
 - 2015년~2018년 현재 : △△△의 자(子)
- 지적측량결과부(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한 건축물 확인

3.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이 여수시 해산동 산 ○○번지에 건축을 한 후 당해 건축물은 최초 건축지번에 현존하고 있고 해당 토지를 지번 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상 여수시 해산동 □□-□번지로 변경되어 있음은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자인 피신청인(여수시)이 건축물대장 최초 작성일인 1978. 5. 28.에 여수시 해산동 ①①번지로 착오 기재한 후 2014. 12. 12. 부동산 행정정보 정비 시 1989. 9. 11. 토지 합병에 따라 여수시 해산동 □□-□번지로 변경된 것으로써
-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2002~2018년 동안의 재산세 과세대장과 과세상황을 확인할 때 피신청인의 기재 착오가 분명하고 한국국토 정보공사 지적측량결과부에서도 여수시 해산동 산 ○○번지에 신청인 건축물의 실체가 현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지번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함.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여수시 해산동 □□-□번지 → 여수시 해산동 산 ○○번지로 건축물대장 상 지번 변경 완료(2018. 5. 2.)

5. 관계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공영주차장 내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처리 요청

1. 민원개요

2018년 5월 4일 밤 9시 30분경 여수시 공영주차장인 홍국체육관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나가려던 중 어두운 곳을 지나가다 카스토파에 걸려 넘어져 팔, 옆구리(척추) 등이 아픈 상태이므로 여수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람.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8. 5. 4. 밤 9시 30분경에 여수시 홍국체육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가던 중 카스토파에 넘어졌고, 다음날 5. 5. 14시 20분경에 여수시청 당직실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 해줄 것을 요구함.
- 2018. 5. 8. 신청인은 시 교통과를 방문하여 보험 처리 요구를 하였으나, 시에서는 시설물의 문제가 없으므로 국가배상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보험신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시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방문하여 민원제기를 하므로 ○○화재와 신청인 간 통화 연결해줌.
- 이후 신청인은 여수시 학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화재 측 손해사정사와 만나 △△병원에서 제시한 검사비용 약 25만원(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보험 부담 비율 등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고, 손해사정사가 시 교통과와 보험 처리 진행상황 관련 통화 시 교통과에서는 보험 처리 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사정 업무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병원 치료를 유보함.

- 신청인은 병원비 본인 부담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8. 5. 10. 여수시 직소민원과 국민신문고에 재차 보험 처리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여수시 교통과)은 2018. 5. 15., 2018. 5. 21. 주차장 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 시설물 문제로 사고 원인이 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을 거듭하였다.

3. 판단 및 결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홍국체육관 공영주차장 내 카스토퍼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주차장 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 시설물 문제로 발생된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카스토퍼의 설치 근거가 없으므로 카스토퍼에 의해 발생된 사고는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하고,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및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홍국체육관 공영주차장에서 발생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은 보험가입자인 여수시가 아닌 보험회사 즉, 여수시가 보험 계약 체결한 ○○화재(○○화재가 고용한 □□손해사정(주))의 권한인 바, 피신청인이 여수시 홍국체육관 공영주차장 내에서 사고 발생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고도 주차장 시설물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보험 혜택 기회를 근본적으로 막고 「보험업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활동한 손해사정사의 임무를 막는 것은 신청인과 손해사정사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미리 과실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보험 신청 후 손해사정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여수시가 공유재산(건물, 관공선, 영조물) 전체를 지방재정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흥국체육관 공영주차장만이 지방재정공제에 비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혜택은 적은 ○○화재에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가입할 것을 권고함.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교통과

○○화재 보험사와 민원인 간 보험 합의로 원만히 처리 완료(2018. 7. 25.)

5.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및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시민옴부즈만 민원 관련 관계자 회의>

흥국체육관 공영주차장 내 사고영상(CCTV) 시청 및 보험 약관 등 자료 제출 요구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대토 보상 요청

1. 민원개요

신청인은 사업장 설치를 위해 여수시 둔덕동 ○○-○번지(전, 778㎡, 이하 민원 토지)를 매입 후 2018년 7월 19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하여 경계복원 측량(2018. 8. 22.)한 결과 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편입된 사실을 알고 편입된 면적만큼 대체 토지로 보상을 요구함.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8. 7. 19.자로 여수시 둔덕동 ○○-○번지(전, 778㎡)를 소유권 이전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2018. 8. 22.자 경계복원측량 결과부에 민원 토지의 경계점 표시가 도로에 표시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토지 778㎡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도로에 편입된 토지 외의 잔여지도 국도대체우회도로(둔덕~주삼) 건설공사로 인하여 사면이 도로로 막혀 있고 현황상 완충녹지로 조성되어 있음.
- 피신청인(여수시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둔덕~주삼)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여수시 고시 제1998-138호, 1999. 1. 5.)」 및 「토지세목(변경)고시(여수시 고시 제2000-9호, 2000. 2. 11.)」로 민원 토지가 국도대체우회도로(둔덕~주삼) 건설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된다는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사업 인정의 고시만 하였을 뿐 이후 같은 법이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법적 절차 이행 없이 미보상 상태로 국도대체우회도로(둔덕~주삼) 건설 공사가 완료됨.

3. 판단 및 결론

- 피신청인이 추진한 국도대체우회도로(둔덕~주삼) 건설 공사는 「토지 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할 것임.
- 그러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토지수용법」 또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바
-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 및 사용에 있어 「토지수용법」에 의거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수용 및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의 고시만 한 후 「토지수용법」이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적법한 보상절차의 이행 없이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함.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도로과

- 여수시 둔덕동 ○○-○번지는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둔덕~주삼)건설 공사 구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된 미지급용지로 확인됨.
- 현 이용 상황이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섬 및 완충녹지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 중이며, 사유지로 활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므로 해당 필지에 대해 현

소유주와 협의 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 후 미지급용지로 보상하고자 함.

5. 관계법령

- 「토지수용법」 제2조, 제3조, 제16조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위치도>



<현장사진>

국·공유지와 사유지 간 교환 요청

1. 민원개요

1980년대 경 발생한 수해 시 훼손된 구거(여수시 오림동 ○○○-○○, 이하 지목상 구거)을 여수시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본인 토지(여수시 오림동 △△△-△, 답, 이하 신청인의 토지)로 구거를 직선화시키고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바 지목상 구거와 신청인의 토지를 상호 교환 요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여수시장)은 토지를 교환해 준 사례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구거로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토지는 피신청인에게 기부체납하고 교환 요청한 피신청인의 토지 지목상 구거는 신청인이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입할 것을 주장해 오다가 최근에는 40여 년 전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신청인의 토지로 구거의 선형이 변형되어 추가 봉괴방지를 위해 복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지목상 구거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하여 인근 토지의 배수로가 막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인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를 교환할 경우 인근 토지주와 다툼이 예상되는바 신청인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음.

3. 사실관계

- 신청인이 교환을 요구한 토지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목상 구기는 여수시

오림동 ○○○-○○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으로는 신청인의 토지에 40m 길이의 구거가 조성되어 있고 지목상 구거에는 2~3m 이상의 수목으로 우거져 있으며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거의 형태를 분별할 수 있고, 수목만 우거져 있을 뿐 토지의 현상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했다고 할 근거가 없음.

- 피신청인이 구거 직선화 사업으로 점유한 신청인의 토지는 전체면적 321㎡ 중 188㎡이며, 잔여지로 남아있는 133㎡는 토지의 형태나 면적으로 보아 농경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임.
- 신청인의 토지를 기점으로 상류지대의 지목상 구거는 지목상으로만 구거 일 뿐 철도·경기장 조성 등으로 그 형태도 존재치 않는 폐구거가 된 상황이고 현황상 구거(*사진 참조)는 1936년도에 개통된 익산-여수 간 철도(전라선 옛 철길공원)를 따라 일자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신청인의 토지와 인접된 부분의 지목상 구거는 곡선(*사진 참조)의 형태이고 이 지점을 지난 하류지대의 구거는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어 호우 시 상류지대 구거의 직강화로 유속과 유량이 증가하여 하류지대의 곡선 지점에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며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토지를 구거로 점유한 시점과 그 사유는 당시 당사자였던 신청인의 부친의 사망과 신청인의 어린 나이로, 피신청인은 관련문서의 폐기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나, 여수시 오림동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오림동 영농회장을 역임하고 지금도 영농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79세)에 의하면 수십년 전에 있었던 수해로 구거가 훼손되었고, 피신청인이 구거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토지에 구거를 직선화시키고 대신 지목상 구거를 주기로 했다는 진술이 있었음.

4.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건설과

- 피신청인이 1980년대 경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구거 직선화를 하였는바 사실상 폐구거로 남아있는 피신청인의 토지와 구거 직선화로 점유된 신청인의 토지를 상호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함에 있어
-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에게 답변해왔던 내용과 달리 40여 년 전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구거의 선형이 변형되었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복구사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지목상 구거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하여 인근 토지의 배수로가 막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인이 있어,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를 교환할 경우 인근 토지주와 다툼이 예상되는바 신청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신청인의 토지를 기점으로 1936년에 개통된 익산~여수 간 철도(전라선 옛 철길공원) 구간, 즉 일직선화 된 구간에서는 태풍 등의 피해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태풍 및 호우 시 상류지대의 직강화로 유속과 유량이 증가하여 신청인의 토지와 인접한 곡선 지점의 구거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방증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태풍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신청인의 토지에 40m 길이의 일직선화 된 구거가 생성되도록 세력이 큰 태풍(호우)이 있었다면 신청인의 토지의 하류지점에서도 같은 피해 발생이 있었어야 할에도 하류지대의 구거는 지목상 구거 형태로 변형됨이 없이 존재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임.
- 또한 신청인이 지목상 구거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면 되고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주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인 간에 처리해야 할 사안인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토지 교환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고, 신청인의 합당한 요구를 본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과 연계시켜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피신청인의 행정작용에 의거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신청인에게 또다른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산(토지)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 반면,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의 토지를 기점으로 상류지대의 구거 즉 익산~여수 간 철도(전라선 옛 철길공원) 구간의 구거 직강화로 인한 하류지대의 곡선지점에서 피해가 발생된 점(상류지대의 직강화 시 하류지대의 피해 발생은 학술적 또는 피해 발생사례로 검증됨), 해당지역의 토착민이며 현 영농회장을 맡고 있는 □□□(79세)의 진술, 당시 시대상황으로 보아 농민의 생명줄인 문전옥답을 아무런 이유 없이 승인해 줄 가능성의 회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은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거 피신청인이 구거 직선화 사업으로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토지(오림동 △△△-△, 답)와 사실상 폐구거로 남아있는 피신청인의 토지(오림동 ○○○-○○, 구거)를 상호 교환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을 권고함.

4.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제5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민원현장 위치도>

3

의견표명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설치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요청

1. 민원개요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사거리 양쪽 차량 대기선을 연장 확보하고 사랑의원 앞 횡단보도 설치 및 넘너리와 금호아파트 간 직진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동시 신호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교통신호 체계 개선을 요청함.

2. 추진상황

- 옴부즈만 주재 관계기관 현장 조사(1차) : 2018. 4. 12.
 - 신청인, 여수시(교통과), 여수경찰서 관계자가 신월동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현장에서 신호체계 개선, 차량대기선 연장 확보, 횡단보도 설치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 확인
 - 2018. 6. 1. 여수경찰서에서 여수시에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한 개선안 통보 : 신호등 및 신호운영에 대한 개선은 도로교통공단의 자문 필요 제시

- 옴부즈만 주재 관계자 현장 조사(2차) : 2018. 6. 26.
 - 여수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 신월동 금호아파트 앞 사거리 현장에서 신호등 및 신호 운영에 대한 현지 실태 파악 점검

-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체계 처리계획 및 결과
통보(여수시 → 읍부즈만)
 - 좌회전 차로구간(월호동 주민센터 방향) 연장공사 : 2018. 8. 24.
 - 공사기간 : 2018. 7. 24. ~ 8. 24.
 - 사업량 : 중앙가로화단 L=10m 제거(아스콘포장 15㎡, 수목이식 90주), 차선도색 1식
 - 신호시설물 개선공사 : 2018. 9. 13.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2018. 12월 내 완료 예정)
 - 사업량 :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체계 및 교차로 개선

3. 결론

신청인이 요청한 신월동 금호아파트 입구 사거리 차량대기선(월호동 주민센터 방향) 연장은 10m가 확보되었고,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횡단보도 설치는 공사계약 의뢰함.



<민원현장 위치도>



〈대기선 연장 前〉



〈대기선 연장 後〉



〈횡단보도 등 前〉



〈횡단보도 등 後〉



〈횡단보도 등 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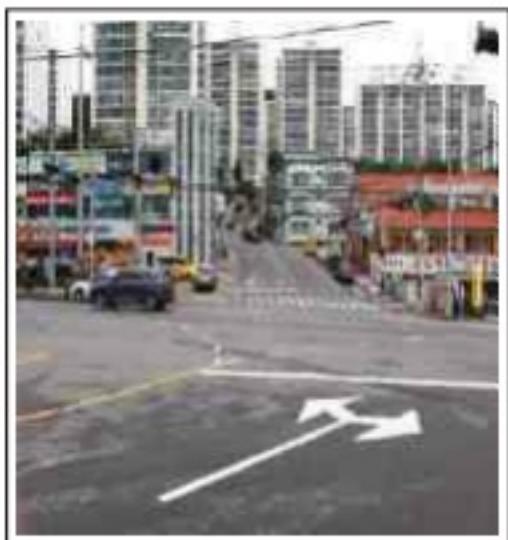
〈횡단보도 등 後〉



<횡단보도 등 前>



<횡단보도 등 後>



<횡단보도 등 前>



<횡단보도 등 後>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교통과

- 좌회전 차로구간(월호동 주민센터 방향) 10m 연장(2018. 8.)
- 횡단보도 설치, 교통신호체계 및 교차로 개선(2018. 1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안내 소홀로 발생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요청

1. 민원개요

- 신청인(○○○)과 남편(△△△)은 2017년 4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년 1월과 6월 부동산 각각 1세대를 매도하여 시에서는 주택임대사업 의무기간(4년)이 위반되어 신청인과 △△△에게 각각 과태료(10백만원) 부과 사전통지하였음.
- 신청인은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 되는 줄 알았고, 해당 공무원이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했으니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함.

2. 사실관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2017. 4. 26.
 - * 등록내용
 - ○○○ : 국동 주공아파트 2세대, 단기민간임대
 - △△△ : 국동 주공아파트 및 서희아파트 2세대, 단기민간임대
- ○○○ 소유 임대주택(1세대) 매도 : 2018. 1. 5.
- ○○○ 사업자등록 말소 : 2018. 5. 14.
- △△△ 소유 임대주택(1세대) 매도 : 2018. 6. 1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2018. 7. 12.
 - ○○○, △△△ 각각 10백만원, 임대의무기간(4년) 위반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8. 7. 18.

3.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2017. 4. 26. 본인과 남편(△△△) 소유 주택에 대하여 피신청인(여수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남편 소유 임대주택 1세대와 본인 소유 1세대를 양도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신청인과 △△△에게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황으로써
- 신청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소시키면 임대사업자등록도 당연히 말소되는 줄 알고 임대주택을 양도 처분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과태료 1천만원은 억울하고, 남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위임장 없이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신청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이 위임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므로 등록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발송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 알림” 공문서에 단기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 개시일부터 4년 동안 매각이 제한 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첨부된 “임대사업자등록안내문”에도 임대주택의 양도(임대의무기간, 매각 제한), 등록 말소, 면적에 관한 상세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등 피신청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 남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본인 사실 확인 여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5호에 “행정 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고 신청인과 △△△이 부부관계인 점, 민원 내용이 양도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민원 신청인의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남편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같은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각 과태료 1천만원 부과처분 예고는 임대주택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한 행정처분 예고로 보이나,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 부족과 행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된 법 위반이므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제55조 관련) 일반기준 라항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인과 남편에게 각각 처분 예고한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함.

4. 처리결과(수용)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 2018. 10. 11. 과태료 2분의 1 감경 부과 사전 통지
- 2018. 10. 25. 신청인 과태료 납부 완료

5.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4**합의**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주)OO 사업허가 취소 요청**1. 민원개요**

- 을촌면 신풍 덕산마을에 위치한 (주)OO 사업장에 폐합성수지 반입량이 최근 기존양보다 많아 인근 마을에 분진, 소음 등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사업허가 취소 또는 환경적 피해 방지 요청

2. 피신청인의 주장

- (주)OO 사업장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섬유류, 폐지류 등) 수집운반업 처리업체로 사업장 내 폐기물 적정량(보관량 1,944.8톤) 이내로 반입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허가 취소가 불가하며, 최근 폐합성수지 허용 보관량 증가로 분진 등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임.

3. 사실관계

- 옴부즈만 민원 접수 : 2018. 3. 7.
- 옴부즈만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방문 : 2018. 3. 13.
 - 참석자(8명) : (주)OO 대표 1, 여수시 5(폐기물관리팀 2, 환경지도팀 1, 을촌면 2), 옴부즈만 등 2

○ 사업장 현장 확인

- 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 시 덮개가 없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분진이 날릴 수 있음.
- 파쇄기와 성형기로 폐합성수지를 기계처리 시,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장회의 결과

- 현 상태에서 사업장 안전 헌스(H=10m) 설치 권장(옴부즈만→㈜OO) → 수용
- 폐기물 차폐 포장 및 작업 시 살수하여 분진 발생 억제

□ 신청인과 사업자간 민원사항 조정(옴부즈만, 윤촌면) : 2018.3.14. ~ 4.30.

4.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기후환경과, 윤촌면

- ㈜OO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따라 폐기업처리업 중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업체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허가 취소가 불가함.
- 다만, 분진 발생으로 주민 불편사항은 양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한 합의 해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과 사업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위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함.

※ 합의내용

1. ㈜OO은 덕산마을 발전기금으로 매년 금일천만원(당초 500만원) 지급
2. 폐기물 분진발생 억제를 위한 헌스 설치 및 작업 시 살수 파쇄
3. 사업장에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마을 대표, 개발위원, ㈜OO 대표자와 협의 시정



<(주)OO 사업장 현장 확인>



<2018. 3. 12. 올부즈만 민원 관련 관계자 회의>

5

심의안내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돌산읍 우두리 ○○○번지(도로) 개설 요청

1. 민원개요

- 신청인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우두리 상-하동에서 마상포길(돌산읍 우두리 ○○○번지)을 이용하다가 도로가 험소하고 훼손되어 사유지(돌산읍 우두리 산△△△-△, □□□-□, 산◇◇◇-◇◇)로 차량 및 농기계를 이용해 농작물을 운반하여 왔음.
- 최근 사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사용해오던 도로를 차단시키므로 농작물 경작 및 운반에 어려움이 많은바 기존 돌산읍 우두리 ○○○ 번지 도로를 복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

2. 피신청인의 주장

- 돌산읍 우두리 ○○○번지는 토지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으나 시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상 도로 노선에 포함되지 않아 도로 개설이 불가함.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건설과, 돌산읍

- 신청인이 차량 및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복원 요청한 돌산읍 우두리 ○○○번지는 토지의 지목상은 도로이나 일반도로(시도) 또는

농어촌도로(면도, 이도, 농도)가 아니므로 도로의 복원이 아닌, 농어촌도로의 개설요구라 할 것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수립된 어수시의 농어촌 도로망도를 종합 검토할 때

- 본 건은 일반도로 또는 농어촌도로가 아닌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므로 매년 4~5월에 개최되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발굴 결정되도록 노력하기를 권유함.



<위치도>



우두리 ○○○번지

우두리 산 △△△-△번지

6

기각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도로로 편입 조사된 사유지 반환 요청

1. 민원개요

2017년 화정면 개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화정면 개도리 ○○○-○ 번지(도로 999.5m²)에 편입된 토지 약 4평에 대해 현재 주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이므로 편입된 토지를 반환해주기를 요청함.

2. 사실관계

-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 : 2016. 3. 2.
-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 2016. 4. ~ 2017. 5.
- 경계 결정 통지(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2017. 6. 1.
- 경계 확정(사업완료) : 2017. 10. 27.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 2017. 10. 27.
- 조정금 산정 통지(면적 증감 필지) : 2017. 11. 14.
- 조정금 지급 및 부과(부과일로부터 6개월) : 2017. 12. 4.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민원지적과

- 신청인이 반환 요청한 화정면 개도리 ○○○-○번지(도로 999.5m²)에 편입된 토지 약 4평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피신청인(민원지적과)이 2016. 3. 2.자로 사업지구를 지정한 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사업으로서,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한 경계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의 이의가

없어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확정함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판단되고,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우편물(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에 따른 측량 실시 안내,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 우편물 발송 결과를 조회한 바 지적 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에 따른 측량실시 안내 공문은 2016. 5. 20., 경계 결정 통지서는 2017. 6. 7.자에 각각 배달완료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 신청인의 소유 약 4평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경계가 확정된 것은 신청인이 내심 불복의 의사가 있더라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경계가 확정되었고, 같은법에 의거 경계를 다시 설정하거나 경계설정을 취소할 수 없는 바 기각하기로 의결함.

4. 관계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방문>

○○시장 임대차 사용기간 폐지 또는 변경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시장 상인회는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과거 조례 개정 이전과 같이 현재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도록 사용허가 기간 삭제, 또는 사용허가 기간 3년 + 갱신 2년 → 사용허가 기간 5년 + 갱신 5년으로 최대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 변경을 요청함.

2. 사실관계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정 : 1998. 4. 4.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 : 2014. 2. 21.
 - 사용기간 명시규정 없음
→ 사용허가 기간 3년, 1회 한정하여 갱신 허가기간 2년 연장 이후 공개추첨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 2016. 1. 4.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요구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현행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사용허가) 제4항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

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시장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조례 제5조 제5항 '제4항의 갱신허가 신청은 1회로 한정하며 갱신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시장 임대차 사용기간 삭제 또는 최대 10년간 사용기간 연장'으로 개정 요구한 내용으로써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에 위반되며, 신규 입점 희망자들과의 협평성 및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키로 함.

4. 관계법령

-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 이주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 관련 시장(市場) 측과 중재 요청

1. 민원개요

수산시장 화재로 인하여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확정되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수산시장과 교동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올라가는 혜택을 누리지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이주를 하게 될 주차장 건설 편입 예정 주민들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바, 수산시장 화재 시 전국적으로 화재 피해 성금을 받은 수산시장 측과 주차장 건설로 인하여 가장 혜택을 누릴 교동시장 측이 이번에는 이주를 해야 될 주차장 조성 편입 예정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중재 요청

2. 사실관계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정 : 2017. 2. 16.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제4차 주민설명회 시
수산시장 화재 피해성금으로 보상 위로금 지원 요구 : 2017. 8. 22.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 이주민에 대한 위로금
옴부즈만 중재 요청 : 2018. 2. 1.
- 옴부즈만 주재 여수시 관계자 회의 개최 : 2018. 2. 6.
 - 교통과, 지역경제과 담당자 참석
- 옴부즈만 주재 관계자 1차 회의 개최 : 2018. 2. 20.
 - 교동시장(회장, 상무), 수산시장(회장, 전무)
 - 신청인 : 이주대책위원장 외 2명
 - 여수시 : 교통과, 지역경제과

○ 회의결과

- 이주대책위원장 : 위로금을 요청하게 된 배경(주차장 조성 동기, 평소 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 주차로 주민 생활 불편 등) 설명 및 위로금 요청
- 시장 측 : 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입장은 이해하나 시장 사정상 위로금 지급은 불가
- 음부즈만 대표 : 위로금 지급이 불가하면 양 시장 측이 이주민에게 위로 잔치 중재안 제시 → 이주대책위원장의 반대로 중재 실패

□ 음부즈만 주재 관계자 2차 회의 개최 : 2018. 3. 29.

- 교동시장(회장, 전무), 수산시장(전무)
- 신청인 : 이주대책위원장 외 6명
- 여수시 : 교통과, 지역경제과 담당자

○ 회의결과

- 이주대책위원장 : 이주 전체 20세대에 대해 세대당 200-300만원 위로금 지급 요청
- 시장 측 : 추후 음부즈만에 시장 측 입장 전달하기로 함

□ 시장 측 이주대책위원장 요구사항 불가 입장 전화 통보 : 2018. 4. 12.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과

신청인이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누리게 될 수산시장과 교동시장 측에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음부즈만에 중재를 요청한 건은 「여수시 시민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우리 시민음부즈만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으나, 여수시가 추진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민음부즈만이 지역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제2차에 걸쳐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양측의 입장과 위로금(기부)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더 이상 중재가 불가한 바 중재 종결키로 결정함.

4. 관계법령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시민옴부즈만 주재 관계자 회의 개최>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에 편입된 떡방앗간에 대한 대체부지 마련 또는 폐업보상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부지에 편입된 ○○떡방앗간에 대해 방앗간을 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거나 폐업 보상 해주기를 요청

2. 사실관계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확정 : 2017. 2. 16.
- 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 주민설명회 : 2017. 8. 22.
 - 주민 추천 평가사 선정
 - 이주택지 부지 제공(이주 희망자 없음)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 2017. 12. 11.
- 토지 보상 협의 : 2018. 2. ~ 3.
 - 신청인 편입물건 : 남산동 △△△△-△번지(대, 116㎡, 건물 128㎡)
 - 물건의 종류 : 토지, 건물, 지장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영업보상(휴업 4개월)
- 사업인정고시(실시설계완료) : 2018. 5.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과

- 대체부지 마련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여수시가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상 현금보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 폐업보상 요구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영업의 폐업보상대상은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서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신청인과 동종의 떡방앗간(즉석판매제조업)이 2018년 2월 현재 여수시 관내 73개소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중에 있고, 최근 나진-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확장 공사로 인하여 이전하게 된 신청인과 동종의 떡방앗간 3개소도 여수시가 휴업보상을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떡방앗간은 폐업보상한 사례가 없으므로
- 신청인이 요구한 대체부지 마련 요구 또는 폐업보상 요구는 이유가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키로 함.

4.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46조 제2항

관문동 소재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취소 요청

1. 민원개요

관문동 〇〇〇번지 내 다가구 주택 건립에 따라 인접 주민에게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일조권 침해 및 단층 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수십 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 건축공사 중단 및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건축법상 신축중인 관문동 〇〇〇번지 다가구주택은 용도구역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 되었는바
-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건축주 및 건축 시공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북측 창문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주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안내할 계획임.

3. 사실관계

- 직소민원(다수인 민원) 접수 : 2018. 2. 23.
- 옴부즈만 민원 접수 : 2018. 3. 5.
- 옴부즈만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방문
 - 참석자(28명) : 신청인 주민 등 23, 건축허가팀장 등 2(여수시), 옴부즈만 등 3
 - 피해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등
- 여수시장 현장 방문 : 2018. 3. 23.
 - 민원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 일조권영향분석평가 전문회사 의뢰 지시 등

- 일조권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용역업체 : 일조시뮬레이션) : 2018.4.

4.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어기민원과

- 신청인이 건축허가 취소 요청한 관문동 〇〇〇번지 내 다가구주택은 용도 구역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와 제71조 제1항 제3호(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에 따라 4층 이하 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
-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망권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며, 일조권 침해에 대해 일조권영향분석평가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일조권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의거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고,
- 또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일조권 등의 발생으로 허용되는 수인(受忍) 한도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일조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 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참고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는 판결(서울고법 2005.10.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등을 종합 검토할 때,

- 신청인이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이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축공사 중단 및 건축허가 취소 요청은 이유 없다할 것인바 기각키로 결정함

5.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86조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확인>

율촌 동양엔파트 아파트 앞 도로변 인도 설치 요청

1. 민원개요

율촌 동양엔파트 아파트 앞 인도가 없어 차량통행 시 보행자 및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아파트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아파트 진입로 인도 개설 요청

2. 피신청인의 주장

- 율촌면 동양엔파트 아파트 진입로 인도개설 요청은 현재 2차선 도로로 보도를 개설할 경우(보도 최소폭 1.5m) 차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간 내 보도개설이 어려운 실정인 바,
- 신청인이 아파트 맞은편 택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도 개설을 요구 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인도 개설을 추진할 계획임.

3. 사실관계

- 동양엔파트 입주민 현황 : 357세대 742명
- 여수 유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 1994. ~ 2001., 80천㎡, 조합(사업시행자)
- 인도 개설 요청 민원 제기
 - 직소민원(2016. 7. 7.), 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의
- 옴부즈만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방문 : 2018. 3. 19.
 - 현 상태에서 도로 폭을 줄이고 한쪽 인도설치 제안 → 주민 반대
 - 일방통행 지정 제안 → 주민 반대

4.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 동양엔파트 아파트의 진입구간 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현 상태에서 도로 폭을 줄여 보도(최소 폭 1.5m)를 설치할 경우 차로 폭 최소 3m, 2차선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기준에 미달될 뿐 아니라, 좁아진 차로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어 도보 설치가 불가하고, 일방통행 지정 또한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현 상태에서는 신청인이 요구한 도보설치는 방법이 없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함에 따라
- 피신청인이 제시한 아파트 맞은편 택지 보도설치 방안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친 후 택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얻어 피신청인에게 도보개설 요구할 것을 권유하면서 본 건은 현재 상태에서 도보를 개설할 대안이 없으므로 기각 결정함.



<시민음부즈만 민원 현장 확인>

신월동 넘너리 진입로 차량회전 공간 확보 요청

1. 민원개요

신월동 금호아파트에서 신월동 주민자치센터 행 넘너리로의 진입을 위한 우회전 시 차량이 한 번에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요청

2.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2018. 4. 12. 신청인, 여수시 관계자(도로관리사업소), 옴부즈만이 민원 현장에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소 회전 반지름이 최소 6미터에서 최대 12미터가 확보되어야 하나, 현 위치는 여건 상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설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안내하고 민원인도 이해함에 따라 기각하기로 함.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확인>

개인하수시설 파손에 따라 유입된 오폐수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보상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봉강동 ○○○~△△△번지 앞 하수관로를 설치하면서 ○○○번지의 하수관로를 공공하수도 관로에 완벽하게 연결하지 않아 신청인의 건축물(여수시 봉강동 □□□-□번지) 밑으로 수십 년 동안 우수 및 오폐수가 흘러내림으로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어,
- 신청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탐문한 결과 ○○○번지의 하수관로 설치와 관로 설치 후 포장 공사를 여수시 도로과에서 했고, 여수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건축물 균열 보강공사 및 지반·석축 보강공사를 여수시에서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사실관계

- 하수도과 민원 접수 : 2017. 8. 16.
- 현장조사 실시(하수정비팀장 외 2명) : 2017. 8. 16 ~ 8. 24
 - 자체설계완료 :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요청 → 동
 - 사업비 9백만원, 사업량 D=300mm, L=40m
 - 토지사용승낙서 거부 : 주택 보수 이전에 토지사용 불가
- 직소민원 접수 : 2017. 8. 24.
- 직소민원 회신 : 2017. 8. 31.
 - 개인배수설비 시설 파손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개인 당사자 간에 해결 할 사항임.
- 단독주택 무료 안전진단 요청 : 2017. 9.
- 단독주택 무료 안전진단 실시(여수시 안전총괄과) : 2017. 9. 19 ~ 9. 22

- 안전진단 결과 통보 : 2017. 9. 26.
 - 개인배수설비 누수로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 2018. 1. 19.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민원 접수 : 2018. 3. 30.
- 옴부즈만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 방문 : 2018. 4. 16.
 - 참석자(6명) : 신청인, 하수정비팀장 등 2(여수시), 옴부즈만 등 3
 - 공공하수관로 및 하수관로 위치(지점) 확인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여수도관

- 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의 균열 원인이 여수시 봉강동 ○○○번지의 하수관로 부설공사로 인하여 우수 및 오폐수가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 지반으로 흘러 내려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 균열은 하수관로 공사를 한 피신청인(여수시장)의 책임이고 또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균열 보강공사 및 지반·석축공사비를 피신청인이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 피신청인은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할 하수관로를 피신청인이 설치할 이유가 없고,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공공하수관리청(여수시)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 균열 보강공사비 및 지반·석축공사비를 피신청인에게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신청인의 건축물(여수시 봉강동 □□□-□번지)에 균열을 발생케 한 요인으로 특정한 여수시 봉강동 ○○○번지의 하수관로를 현지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이 관리한 공공하수도관로가 아닌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에서 규정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하는 하수관로임이 확인되었고 신청인 또한 동 하수관로 공사를 피신청

인이 설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의 균열 발생의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볼 합당한 이유가 없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이유로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 균열 보강공 사비 및 지반·석축공사비를 보상 요구하는 것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반대급부로 내는 사용료이므로 이유가 없다할 것인 바 기각기로 결정함.

3.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27조



<위치도>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요청

1. 민원개요

- 여수시 남면 화태리 ○○○번지(전, 734㎡)를 2010년 경매로 낙찰 받아 7년 넘게 경작을 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 1,614,800원이 부과되어 경작을 하였다는 마을 주민의 확인까지 받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홀로 타지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살다보니 직접 경작은 못했으나 친구가 경작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잘못 조사된 농지실태조사로 부과된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 요청함.

2. 사실관계

◆ 이행강제금 부과

- 201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 2013. 6. 10.
- 처분요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휴경) : 2013. 7. 3.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 2013. 10. 11.
-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통지 : 2013. 11. 28.
-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분명령 통지 : 2014. 12. 23.
-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2016. 9. 8.
-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2016. 11. 17.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17. 3. 14.
 -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검토결과 회신(2017. 4. 4.)
- 시효취득원인의 소유권 이전 법원판결에 따른 애로사항 토로 및 이행강제금 철회 : 2018. 4. 16.
 -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검토결과 회신(2018. 6. 1.)

◆ 소유권 이전(여수시 남면 화태리 ○○○번지, 전, 734㎡)

- △△△(1996. 8. 7. 매매) : 1996. 8. 23.
- □□□, ◇◇◇(2010.12.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 2010. 12. 30.
- ◇◇◇(2012. 2. 6. 공유물 분할) : 2012. 2. 16.
- 시효취득 완성(2015. 9. 5.)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소 제기(광주지법 순천지원 2016가단73921, 원고 ◎◎◎, 피고 ◇◇◇) : 2016. 5. 19.
- 1심 판결 선고(원고 승) : 2017. 4. 4.
- ◎◎◎(2015. 9. 5. 시효취득) : 2017. 6. 8.
- 2심 판결 선고(광주지법 2017나58792, 항소각하) : 2018. 2. 9.
- 3심 판결 선고(대법원 2018나220369, 심리불속행기각) : 2018. 2. 9.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농업정책과

- 201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수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법」 제2조 여수시 남면 화태리 ○○○번지(전, 734 ㎡) 소유주 ◇◇◇에 대하여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1,614,800원)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으로써
- 신청인은 2010년 법원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부터 20~30년 수령의 두충 나무가 삭제되어 있었고, 소유권 이전 후 7년 동안 두충나무 밭을 경작하면서 화태리 주민의 도움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고 판결에 효능이 있다는 두충나무를 잘라서 마을 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농지실태조사가 잘못되었고
- 피신청인(여수시)이 보낸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서, 농지처분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분명령 통지서 등은 일정한 거처 없이 흘로 각처를 떠돌아다니는 일용노동자 처지로 일체 받지 못하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화태마을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피신청인은 「농지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신청인에게 청문실시를 고지하였음에도 기간 내 청문을 불참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1. 28. ~ 2014. 11. 27.(1년)까지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였고, 이를 이행치 않아 2014. 12. 23.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분명령(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을 통지하였음에도 이의가 없어 2016. 9. 8.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후 2016. 11. 17.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게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주장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한 여수시 남면 화태리 ○○○번지(전, 734㎡)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대로 두충나무를 한 때 관리했던 일부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그 시기와 정도는 파악이 불가능했고, 전라남도에서 2013. 3. 25. ~ 4. 5. 실시한 “2013 여수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아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2013. 7. 3.)시 현장 사진 상으로는 오랫동안 휴경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본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주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듣고자 하였음에도 청문에 불참하여 스스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였고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 11. 28. ~ 2014. 11. 27.(1년)까지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은 신청인의 개인적 처지가 신청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의무를 합법화 시킬 수 없으므로 농지처분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요청은 기각키로 함.

4. 관계법령

- 「농지법」 제2조, 제10조, 제55조, 제62조
- 「농지법 시행령」 제7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확인>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된 사유지 내 하수관로 이설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 연등동 ○○○번지와 신청인 소유의 연등동 △△△번지 내에 수년 전 누군가 매설한 하수관로를 통해 다량의 생활하수와 장마철 우수로 인해 신청인의 토지에 있는 용벽이 침하되고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으니 승낙 없이 설치한 하수관로를 조속히 이설 요청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하수도과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연등동 △△△번지에 매설된 하수관로는 신청인의 승낙 없이 설치된 시설물인 바 이설을 요청하고 있으나,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에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 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고등법원도 “「민법」 제218조에 규정된 수도 등 시설권은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상린관계에 기초한 소유권 제한 규정으로 상린관계가 인정된 이상 토지사용에 대한 피고의 수인의무가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25707 판결 참조)

□ 현장 조사 결과 신청인이 이설을 요청한 하수관로는 상부에서 훌려내려온 자연유수 위치에 하수관로를 매설한 것으로 보이고 하수관로 매설 위치 또한 신청인의 토지와 인접된 □□□번지와의 경계지점에 매설되어 있어 하수관로 설치로 인하여 신청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한 점과,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규 하수관로를 설치할 경우 「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에 의거 토지승낙서 및 주민동의서를 구해야하는데 이 또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옹벽 침하 우려 시에는 하수관로 보강 및 옹벽 보강 공사로 해소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할 것인바 기각 키로 결정함.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확인>

7

각하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차량원부 멸실 및 세금 감면 요청

1. 민원개요

- 신청인은 1998년까지 전남5다○○○○○(베스타)를 학원차량으로 운행하다 학원을 폐업하고 차량을 폐차하고자 친구가 운영하던 문수동 소재 카센터에 폐차를 의뢰하여 폐차된 걸로 알고 있었음.
- 당시 폐차하면 자동으로 폐차정보가 시에 통보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차량에 대한 세금이 계속 부과되었으며,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를 한다하여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폐차하고자 하였으나 운행한 적이 없는 차량에 대한 세금(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너무 많아 개인적인 부담이 되고 바쁜 개인일정으로 매듭짓지 못하다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차량등록 말소와 세금 감면을 요청함.

2. 사실관계

- 자동차 현황
 - 등록번호 : 전남5다○○○○○(베스타, 승합소형)
 - 소유자 : △△△
 - 등록일 : 1992. 6. 10.
 - 검사유효기간 : 1997. 6. 10. ~ 1997. 12. 9.
 - 특기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37건(1999년 ~ 2017년)

- 지방세 등 체납 내역(37건, 1,739,580원)
 - 자동차세 : 2건, 127,200원(2016년 ~ 2017년 부과분)
 - 환경개선부담금 : 35건, 1,666,380원(2001년 ~ 2018년 부과분)
- 신청인에게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신청 안내 : 2018. 6. 25.
- 1997년 이후 주정차위반 및 속도·신호위반 등 운행사실, 과태료 부과내역 조회 결과 → 해당 없음(차량등록사업소 회신) : 2018. 7. 3.
-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신청서 보완 요청 : 2018. 7. 4.
 -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신청 제 안내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세정과

- 음부즈만 민원 신청에 따른 보완 요청을 2회에 걸쳐 하였으나 보완이 되지 않음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진행을 할 수 없어 「여수시 시민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종결 처리 함.

○○아파트 내 운동시설의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요청

1. 민원개요

여수시 신기동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이 경매절차에 의해 2015.

1. 19. △△△△△교회로 소유권 이전되었음. 이후 운동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여수시는 3년간 용도변경을 거절하여 거액의 세금도 부과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조속한 용도변경 허가를 요청함.

2. 사실관계

-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경매 취득 : 2015. 1. 19.
- 행위신고서(용도변경) 접수 : 2015. 9. 24.
* 행위신고내용 : 건물(지하 1층~ 지상3층)을 종교집회장으로 변경
- 행위신고서 수리 불가 처분 : 2015. 10. 8.
- 행정심판 청구 : 2015. 12. 1.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청구 기각 결정 : 2016. 1. 28.

3. 판단 및 결론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본 민원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확정된 사항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함.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V. 부록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제정) 2016.12.30 조례 제12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리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자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제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의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옴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제정) 2016.12.30 조례 제12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 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옴부즈만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자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옴부즈만이 주재한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옴부즈만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과천 공무원이 수행한다.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옴부즈만이 한다.

④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옴부즈만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경정) ① 옴부즈만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옴부즈만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첩·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옴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3.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회망부서 전보, 근무 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옴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